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본 규정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주식회사 네이버(이하 '네이버'라 한다)와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라 하며,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를 지칭할 때는 '포털사'라 한다)로부터 위임 받은 양사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위한 평가 활동 지침으로,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포털사'의 뉴스제휴에 대해 아래 각 항의 제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뉴스제휴 및 제재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포털사'의 뉴스 제휴 매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평가 등 제반 사항. 대상 및 평가 절차, 평가 방식, 평가 요소 등이 포함된다.
- ② '포털사' 제휴 매체들의 부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제반 사항. 부정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조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식 등이 포함된다.

제2조 (운영원칙)

- ① '뉴스제휴평가위'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과 관련, 언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뉴스제휴평가위'는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제휴매체’는 ‘뉴스검색제휴’나 ‘뉴스콘텐츠제휴’, ‘뉴스스탠드제휴’를 하고 있는 언론매체를 말한다.
- ② ‘뉴스검색제휴’란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 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포털사’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뉴스콘텐츠제휴’란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에 기반하여 인링크(in-link) 방식으로 ‘포털사’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뉴스스탠드제휴’란 서비스 내 집행되는 광고수익의 금전적 제공을 기반으로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된 언론사의 뉴스 정보를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네이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⑤ ‘제 1소위’란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를 의미한다.
- ⑥ ‘제 2소위’란 뉴스 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를 의미한다.

제4조 (제휴 영역)

‘포털사’의 뉴스제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가) ‘뉴스검색제휴’
- (나) ‘뉴스콘텐츠제휴’
- (다) ‘뉴스스탠드제휴’

제5조 (제휴 대상)

제휴 대상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6조 (제휴 요건)

‘포털사’의 ‘제휴매체’가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
- ② <별표 1>에서 규정한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 ③ 전송 안전성 등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한 매체
- ④ ‘뉴스콘텐츠제휴’ 및 ‘뉴스스탠드제휴’의 경우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 ‘매체사’로 등록된 후 육(6)개월이 지난 매체

제7조 (제휴 단위)

‘포털사’의 제휴영역 및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제휴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제휴 단위는 매체로 한다.
- ② 포털과 제 3조에 따른 제휴대상 사업자 간의 제휴는 일사일매체(一社一媒體)와 일사다매체(一社多媒體) 모두 가능하다.
- ③ 제휴승계
 - (가) ‘제휴매체’로서 유관법령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제휴 계약 당시 제휴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제휴매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나) ‘포털사’는 제 3항 (가)호의 경우로써 사업자의 카테고리(뉴스콘텐츠영역) 변경이나 확장이 있을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제휴신청)

뉴스제휴 신청은 현행과 같이 ‘포털사’의 안내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제휴 신청 및 평가 과정은 <별표 2>에 따른다.

- ① 구비서류 :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증이나 허가증과 <별표 3>의 매체소개서
- ② 매체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은 제휴 정성평가에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 되며 A4 용지 3장 분량 (자간 160% / 10pt) 으로 제한한다.

제9조 (제휴 신청 주기 및 평가 주기)

- ① ‘뉴스검색제휴’ 매 년 이(2)회 접수한다.
- ② ‘뉴스콘텐츠제휴’ 매 년 일(1)회 접수한다.
- ③ ‘네이버’의 ‘뉴스스탠드제휴’는 매 년 일(1)회 접수한다.
- ④ ‘뉴스검색제휴’ 및 ‘뉴스스탠드제휴’의 경우 재평가 주기는 일(1)년으로 한다. ‘뉴스콘텐츠제휴’의 재평가는 ‘뉴스제휴평가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할 수 있다.
- ⑤ 본 규정 제 15조 1항 (마)호에 따라 계약해지 조치된 ‘제휴매체’는 계약해지 일로부터 일(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다.
- ⑥ 제휴 형태별 신청 및 평가주기는 <별표 4>와 같다.

제10조 (평가 방법)

- ① ‘뉴스제휴평가위’는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최종 제휴 여부는 15개 단체 추천 제휴평가위원 1명씩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평가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 ② 평가항목은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고 정량평가에 40% 정성평가에 60% 배점이 되도록 한다. 정량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표 5>에 따르고, 정성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표 6>에 따른다.

- ③ 뉴스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정한 최소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 (가) ‘뉴스검색제휴’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나) ‘뉴스스탠드제휴’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 (다) ‘뉴스콘텐츠제휴’ :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 ④ 최종 평가점수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 한다. 동일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복수로 있는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 ⑤ 정성평가의 3개 상위 평가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영역에서 평가위원의 과반수로부터 최저 점수 이하를 받게 되면 해당 매체는 총점과 상관 없이 제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목별 최저 점수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10점, 윤리적 요소 10점, 수용자 요소 4점으로 한다.
- ⑥ 뉴스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

제11조 (‘제휴매체’ 제공 콘텐츠 모니터링)

- ① ‘뉴스제휴평가위’는 제 15조에 명시된 부정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직접 모니터링 및 이용자 신고를 기초로 한 간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② 직접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준에 의해 설계된 알고리즘 또는 모니터링 요원이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 ③ 간접 모니터링은 이용자들이 신고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행한다.
- ④ ‘뉴스제휴평가위’는 직접 모니터링 및 간접 모니터링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평가위원은 위반 의심 사례를 인지한 경우 ‘포털사’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는 그 결과를 정기/수시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2조 (모니터링의 위탁)

‘뉴스제휴평가위’는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털사’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받은 ‘포털사’는 ‘제휴매체’들의 송고 기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월 일(1)회 모니터링 보고서를 ‘뉴스제휴평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모니터링결과에 따른 평가)

- ① ‘뉴스제휴평가위’는 제 12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를 위하여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 ② 정기평가는 매월 일(1)회 실시한다.
- ③ 수시평가는 ‘뉴스제휴평가위’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칠(7)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4조 (부정행위 등)

- ①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 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대상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본다. 부정행위에 대한 유형과 평가기준은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가) 중복·반복 기사 전송
 - (나)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 (다)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 (라)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 (마) 선정적 기사 및 광고
 - (바)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 (사)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제 3자 기사 전송)
 - (아)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 (자)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 (차)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 ② 다음 각호의 경우를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사유로 인해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이하 ‘접속불량’)으로 본다.
 - (가) 악성코드가 탐지 : ‘제휴매체’ 페이지로 이동 시 브라우저 또는 디바이스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 등에 의해 악성코드가 탐지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나) 데드 링크 : 악성 코드 등으로 인해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다) 기타 접속 불량 : ActiveX 등 이용자 동의, 유료정보, 성인인증 등 로그인에 필요한 콘텐츠가 열리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 (‘제휴매체’ 관련 조치의 권고)

- ① 모니터링결과에 따라 제휴평가위가 네이버, 카카오에 권고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상세규정은 <별표 8>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가) 시정요청
 - (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 (ㄴ) ‘접속불량’이 발생한 경우
 - (ㄷ) 위 경우 <별표 8>에서 정한 벌점을 부여한다.
 - (나) 경고처분
 - (ㄱ) 일(1)개월 이내에 10점 이상 벌점을 받는 경우
 - (ㄴ) 12개월 이내에 누적된 벌점이 30점에 이른 경우
 - (다)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 (ㄱ)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매체'가 기간에 상관 없이 10점 이상 벌점을 받는 경우
- (라)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
 - (ㄱ)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처분을 받은 '제휴매체'가 기간에 상관 없이 10점 이상 벌점을 받는 경우
- (마) 계약해지
 - (ㄱ) 12개월 이내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 처분을 받은 '제휴매체'가 기간에 상관 없이 10점 이상 벌점을 받는 경우
 - (ㄴ) '접속불량' 중 악성코드 탐지가 발생하여 '포털사'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ㄷ) '접속불량' 중 데드링크 상태가 발생하여 '포털사'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데드링크 상태가 삼(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② '뉴스제휴평가위'는 권고할 조치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부정행위 등이 이용자나 언론 전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전체 기사 중 부정행위의 비율, 매체사의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 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라도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 2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을 권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 2소위' 위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발의된 사안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뉴스제휴평가위'는 필요한 경우 제 15조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조치 대상 '제휴매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제재 심의 의결 절차)

본 규정에 의한 ‘뉴스제휴평가위’의 회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위원 회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매체사’에 제 15조 1항 (나) 내지 (마)호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제 2소위’ 위원 15명 중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할 경우로 정한다.

제18조 (‘포털사’에 대한 권고 등)

- ① ‘포털사’는 본 규정에 의거한 ‘뉴스제휴평가위’의 결정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양사는 기술적 이유 등으로 평가위 결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포털사’는 ‘뉴스제휴평가위’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한 자료를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 ③ ‘포털사’는 평가업무의 실효성을 위해 이용자가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평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위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위는 필요 시 별도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 19 조 (경고 처분 대외 공표)

‘뉴스평가위원회’는 ‘제휴매체’의 자정 노력을 위하여 제 15조 1항에 따라 경고처분 이상 조치된 건에 대한 부정행위 및 처분 내용을 적절한 방법(서비스 공지사항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제휴매체’ 이름은 노출하지 않는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 00시부터 시행한다.

※ 별표 목록

<별표 1>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량 비율

<별표 2> 제휴 평가 절차

<별표 3> 매체 소개서

<별첨 4> 제휴 형태별 평가 주기

<별표 5> 정량평가

<별표 6> 정성평가

<별표 7> 부정행위의 유형

<별표 8> 제재기준

<별표 9> 선정성 판단 정책

<별표 1>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

분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일간지	매월 200건 이상	30% 이상
주간지	매월 50건 이상	40% 이상
월간지	매월 20건 이상	50% 이상
인터넷신문	매월 100건 이상	30% 이상
전문지	매월 50건 이상	40% 이상
방송사	매월 200건 이상	30% 이상

<별표 2> 제휴 평가 절차

분류	내용
온라인 신청	- 제휴 영역에 상관 없이 한 달 전 제휴 신청 페이지 오픈 * 구비서류 :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증이나 허가증 / 매체소개서 (A4 3장 분량 / 자간 160% / 10pt)으로 제한)
제휴평가	- 평가 기간 : ‘뉴스검색제휴’: 제휴접수 마감으로부터 최소 4주, 최장 6주 ‘뉴스콘텐츠제휴’, ‘뉴스스탠드제휴’: 제휴접수 마감으로부터 최소 4주, 최장 6주 - 평가 방법 :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
제휴 여부 결정	- 안내 : 평가 후 제휴 여부에 대해 각 ‘포털사’ 개별 안내

‘제휴매체’ 등록 진행	- 등록 : 계약 및 기사 전송 관련 기술적 작업 - ‘포털사’ 계약 기준 및 기술 정책에 따름
-------------------------	--

<별표 3> 매체 소개서

분류	내용
회사 관련	• 설립일자, 등록번호, 회사연혁,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도메인, 취재 및 편집 인력 현황, 조직도
윤리 관련	•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 윤리와 관련한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과 실천 활동 • 언론사의 지향 가치, 철학 • 위 가치를 실천한 기사 사례와 관련한 구체적 자료
서비스 관련	• 자체 서비스 트래픽 (UV / PV / 체류시간 등) • 매체 혹은 콘텐츠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콘텐츠 관련	• 기사 생산 현황 (전체 생산량 / 자체 기사 비율) • 특종(단독보도)과 대외적 수상 실적

<별표 4> 제휴 형태별 신청 및 평가주기

	네이버			카카오	
제휴영역	‘뉴스 검색제휴’	‘뉴스콘텐츠제휴’		‘뉴스검색제휴’	‘뉴스콘텐츠제휴’
서비스	뉴스 검색	뉴스 스탠드	네이버 뉴스	뉴스 검색	다음 뉴스
평가주기	6개월	12개월		6개월	12개월

<별표 5> 정량평가

구분	점수	항목	내용
제휴 통과 기준	통과 시 기본점수 30점 부 여	발행 기간	·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최소 일(1)년 이상 된 매체
		기사 생산량 (생산 지속력)	· 매체 발행 주기별로 최소 기사량 충족 요건 - 일간지 월 200건 이상 - 주간지 월 50건 이상 - 월간지 월 20건 이상 - 인터넷신문 월 100건 이상 - 전문지 월 50건 이상 - 방송사 월 200건 이상
		자체기사	· 자체기사 - 자체 기사는 통신기사나 타매체 기사를 제외하고 신청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 생산한 뉴스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사뿐 아니라 칼럼, 동영상, 만평, 그래픽 등 독자적 뉴스 가치가 있는 콘텐츠가 모두 포함된다. 통신기사나 타 언론 기사를 부분 수정해 사실상 표절한 기사나 작성자가 표시되지 않은 무기명 기사는 제외한다. - 일간지 및 방송사, 인터넷신문 30% 이상

독자적 기사 생산 능력	최대 10점		주간지 및 전문지 40% 이상 월간지 50% 이상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본 매체의 기사도 자체기사에 포함
		기술적 안정성	· 전송 안전성 등 기술적 안정성
		자체 생산 기사 비율	· 각 매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체 기사 비율을 감안해 5단계로 평가

<별표 6> 정성평가

	점수	항목	내용
저널리즘 품질요소	25점	가치성/수행성 (5점)	· 설립 취지, 언론사로서 보도방향과 비전, 원칙 등 · 설립 후 보도 활동과 성과
		시의성/중요성 (5점)	· 뉴스가치가 있는 기사를 시의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 · 뉴스의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 사회 구성원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슈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안을 우선적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정확성/완전성 (5점)	· 기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 기사의 출처와 취재원을 투명하게 밝히고 있는지 · 기사에 나오는 사실과 자료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 기사가 관련된 사실들을 충분히 다루고 포괄적으로 보도하는지
		전문성/	· 매체가 다루는 분야에 대한 뉴스 내용의

		심층성 (5점)	전문성이 충분한지 · 해당 분야에서 다른 매체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기사를 제공하는지 · 독자적으로 취재, 생산하는 기획성 기사가 얼마나 되는지 · 기사의 내용이 충분히 깊이가 있거나 심층적인지
		공정성/ 균형성 (5점)	· 기사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주장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 기사의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지 ·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지는 않는지 · 의도적으로 편향적이거나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윤리적 요소	25점	실천의지 (5점)	·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 윤리 준수를 서약하거나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이를 실천 하는지
		권익침해 (5점)	·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 공익과 무관한 보도로 사생활 침해를 하는지 · 어뷰징에 해당하는 기사를 생산하는지
		광고윤리 (5점)	·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편집, 배열하는지 · 기사 중간에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을 포함하는지 ·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기사 내용을 담고 있는지 · 의료, 부동산, 주식, 식품광고 등 유해성이 높은 광고를 게재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지
		선정성 (5점)	· 상업적 목적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보도하거나 강조하는지 · 잔혹하거나 음란한 내용 혹은 이미지를 과도하게 보도하거나 강조하는지

수용자 요소	10점		· 범죄와 재난 보도 과정에서 관련된 피해자 및 당사자의 감정이나 피해 가능성을 배려하는지 ·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을 신중하게 보도하는지
		저작권 윤리 (5점)	· 일반적인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 타 언론사나 기사, 이미지, 영상물 등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하거나 전재하는지 · 개인의 기사, 이미지, 영상물 등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하거나 전재하는지
		창의 및 혁신성 (5점)	·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시도로 새로운 뉴스 모델을 제시하는지 · 모바일, SNS 등 새로운 매체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는지 · 콘텐츠의 소재나 구성, 내용이 새롭고 신선한지
		수용자 친화성 (5점)	· 수용자의 참여와 반응이 활발하고 긍정적인지 · 수용자들이 보고, 읽고, 참여하는 것이 편리하도록 돼 있는지 · 수용자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는지

<별표 7> 부정행위의 유형

1. 중복·반복 기사 전송

- ① 동일 기사 중복·반복 전송 : 원천기사의 일부만 변경해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

(ㄱ) 동일한 기사에 제목만 바꾼 경우

(ㄴ) 동일한 기사에 문구를 일부 추가 하거나 문장 순서만 바꾼 경우

(ㄷ) 동일한 기사에 방송 캡처화면 등 사진이나 이미지 일부만 바꾼 경우

- ② 카테고리 중복 전송 : 사실상 동일한 기사를 각 포털의 서로 다른 포털 내 뉴

스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 ① 전체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이 추천 검색어나 자극적 단어를 제목 또는 본문에 삽입하거나, 배경과 같은 색깔을 써서 보이지 않게 삽입한 경우를 의미한다.

3. 관련뉴스·실시간뉴스 영역 남용

- ① ‘포털사’가 ‘뉴스콘텐츠제휴’ ‘제휴매체’의 기사 하단에 제공하는 관련뉴스 또는 실시간뉴스 영역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아래와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
 - (ㄱ) 해당 영역에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를 노출한 경우
 - (ㄴ) 해당 영역에 기사와 무관한 추천검색어 또는 선정적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노출한 경우

4.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 ①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전송 : 기사 본래의 정보전달 목적이 아닌 기사로 포장된 광고·홍보 목적이 분명한 기사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아래와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
 - (ㄱ) 일반적인 기사와 달리 기사 작성자의 분석과 평가 없이,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등이 게재된 경우
 - (ㄴ) 홍보회사, 광고회사에서 작성 또는 제공한 원자료를 거의 그대로 기사 형식으로 만든 경우
- ② 링크 신뢰성 훼손: 기사를 보기 위해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 결과가 이용자의 일반적 기대와 달리 상업적 목적이 큰 콘텐츠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아래와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

(ㄱ) 링크 클릭했을 때 미리보기 영역에서 보여진 내용과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ㄴ) 기사 제목 또는 본문 안에 기사와 무관한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삽입하는 경우

③ 가독성 훼손 광고 전송 : 기사를 보기 위해 링크를 클릭했을 때, 매체사 페이지로 이동 후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5. 선정적 기사 및 광고

① 선정적 기사 및 광고라 함은 ‘포털사’의 청소년보호정책에 위반하는 문구와 이미지를 포함한 기사 및 광고를 말한다.

② ‘제휴매체’ 페이지 내 선정적 콘텐츠 및 광고 게재 : ‘포털사’에 제공된 기사를 클릭해 보여지는 ‘제휴매체’ 페이지에 기사내용과 무관한 선정적인 콘텐츠나 광고가 게재된 경우를 의미한다. 선정적 게시물에 대한 판단은 <별표 9>를 준용한다.

6.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① 이미 보낸 기사의 URL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혀 다른 내용의 제목 또는 본문의 기사로 수정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7. 미계약 매체사 기사 전송(제 3자 기사 전송)

① ‘제휴매체’가 ‘포털사’에 ‘제휴매체’가 아닌 매체사(법인, 개인에 제한을 두지 않음)의 기사(이하 ‘제 3자 기사’라 한다)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휴매체’인 A사가 ‘포털사’와 제휴하지 않은 B사 또는 A사의 자매회사 등의 ‘제 3자 기사’를 A사의 기사인 것처럼 우회 송고하여 ‘포털사’ 뉴스에 노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8.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 ① 베껴쓰기: 타 매체사에서 보도한 기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발췌해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 ② 이미지 저작권 침해: 타인이 소유한 이미지를 협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9.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 ① '제휴매체'가 '포털사' 최초 제휴 시 협의된 카테고리 외의 기사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예) 경제 카테고리로 등록된 '제휴매체'가 연예 카테고리 기사를 사전 협의 없이 전송하는 경우 등

10.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추구

- ① '포털사'에 전송하는 기사를 이용하여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ㄱ) '포털사'에 노출되는 기사의 삭제 또는 수정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 (ㄴ)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포털사'에 기사를 전송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위해의 고지)
- ② '포털사'와 제휴된 이후 이러한 사실을 빌미로 협찬비나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 ③ 제 2항에 따른 부정행위 입증의 증거자료는 해당 이해당사자 간의 음성 또는 영상 녹음, 이메일, 문자 또는 SNS메시지, 사진 등을 말한다.

<별표 8> 제재기준

1. 반복 중복 기사 벌점 (1일 기사 송고량 기준)

반복 중복 기사 비율	벌점	비고
1%이상 10%미만	1점	1일(24시간) 기준
10%이상 20%미만	2점	1일(24시간) 기준
20%이상 30%미만	3점	1일(24시간) 기준
30%이상 40%미만	4점	1일(24시간) 기준
40%이상 50%미만	5점	1일(24시간) 기준
50% 이상	10점	1일(24시간) 기준

2.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벌점 (1일 기사 송고량 기준)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 비율	벌점	비고
1%이상 5%미만	1점	1일(24시간) 기준
5%이상 10%미만	2점	1일(24시간) 기준
10%이상 15%미만	3점	1일(24시간) 기준
15%이상 20%미만	4점	1일(24시간) 기준
20%이상 25%미만	5점	1일(24시간) 기준
25% 이상	10점	1일(24시간) 기준

3. '제3자 기사전송'이 자사의 1일 기사 송고량의 5% 이상인 경우

반복 중복 기사 비율	벌점	비고
5%이상 10%미만	1점	1일(24시간) 기준
10%이상 15%미만	2점	1일(24시간) 기준
15%이상 20%미만	3점	1일(24시간) 기준
20%이상 25%미만	4점	1일(24시간) 기준
25% 이상 30% 미만	5점	1일(24시간) 기준
30% 이상	10점	1일(24시간) 기준

4. 타 부정행위별 벌점

부정행위 유형	벌점	비고
관련뉴스·실시간뉴스영역 남용	1점	부정행위 유형에 관계 없이 각기 다른 부정행위 5건 누적 시 1점 부과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전송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베껴쓰기 등)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5점	건당 벌점제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5. 벌점과 제재

- ‘제휴매체’ 별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며, 12개월 이후 ‘0’점부터 재 누적한다.

- '뉴스제휴평가위'는 본 규정 제 12조에 명기된 모니터링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를 위한 평가 작업을 매월 일(1)회 실시한다.

1) 최초 평가 시

벌점	제재	비고
10점 미만	시정 요청	
1개월 이내 누적 벌점 10점 이상	경고 처분	대외공표, 매체명 비공개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 이상	경고 처분	대외공표, 매체명 비공개

2) 제재 조치 후 재평가 시

벌점	제재	비고
10점 이상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대외공표, 매체명 비공개

3)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후 재평가 시

벌점	제재	비고
10점 이상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	대외공표, 매체명 비공개

4)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 후 재평가 시

벌점	제재	비고
----	----	----

10점 이상	계약해지	대외공표, 매체명 비공개
--------	------	---------------

<별표 9> 선정성 판단 정책

1. 성 관련 콘텐츠

구분		상세 내용
노출	적극적 차단	- 성기 노출(바디페인팅, 타투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함) - 둔부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경우 - 사람과 유사하게 묘사된 인형이 성기, 음모, 항문, 유두를 노출한 경우 - 여성의 유두/유륜 노출된 경우 - 유두, 성기 노출 없는(모자이크 포함) 여성의 전신 전라
	사안별 검토	- (정보성 또는 의학적 의도인) 성기 및 유두 노출 실사 UGC - 남성/여성의 성기가 하의 위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 -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둔부 노출 - 정상적인 옷을 입은 상태이나 옷 위로 유두의 모양(형태가) 비치거나 도드라진 경우 - 주요부위(성기, 항문, 둔부)의 노출이 없는 남성의 전신전라 - 주요부위의 노출은 없으나, 상의 혹은 하의를 탈의한 경우
성행위	적극적 차단	- 성기, 음모, 항문이 노출되지 않은 성행위 - 성기구를 이용한 성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 성적 체벌 이미지 또는 체벌 관련한 UGC -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가슴, 둔부, 성기에 입 또는

		손 등을 이용한 성행위 - 착의상태이나 성기 부분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 성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 착의상태이나 옷 속으로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안별 검토	- 비정상적인 속옷이나 의상을 입어 성적 의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 성기/둔부 등의 신체노출 없이 가학/피학성 성행위 묘사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모자이크 UGC -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UGC - 착의 상태이나 둔부가 비쳐보이거나 노출되어 선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착의 상태이나 특정 신체 부분을 클로즈업(부각)하여 성적 의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2. 폭력 관련 콘텐츠

구분		상세 내용
살해 상해	적극적 차단	- 인간, 동물, 공상의 캐릭터의 피와 출혈을 동반한 절단, 손괴 등 잔인한 살해 - 무방비 상태에서 대응할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고문 등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내용 묘사 - 인간, 동물, 공상(실존 생명체인 인간, 동물 등을 형상화한 캐릭터의 살해
	사안별	- 인간, 동물, 공상(실존 생명체인 인간, 동물 등을 형상화한) 캐릭터의 상해

	검토	- 물체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 - 유혈상태를 보이지 않는 격투
--	----	---

3. 언어 관련 콘텐츠

현장을 전달하는 기사의 경우 저널리즘적 목적으로 현장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사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구분		상세 내용
노골적 비속어	적극적	- 노골적인 성교 및 성기 표현
	차단	- 노골적인 신체 훼손을 담은 표현
	사안별 검토	- 동물에 표현한 비유 - 신체 대한 비하 표현